

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



경 상 북 도 의 회
(허 복 의원 외 13명)

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

(허 복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	917
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5. 2. 27.

발 의 자 : 허 복·한창화·남진복
이우청·김진엽·김창기
남영숙·윤승오·황명강
손희권·노성환·김용현
박순범·최덕규 의원
(14명)

1. 제안이유

-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역사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방유물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사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소방유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소방유물 수집 금지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
3. 조례안: 붙임

4. 관련법령 발췌: 붙임

5. 관련부서 협의

가. 법제심사: 검토완료

§예산입법담당관-288(2025. 2. 24.)호

나.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§민자활성화과[정책기획관-2258(2025. 2. 20.)호]

다.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

§감사관[정책기획관-2258(2025. 2. 20.)호]

라. 해당부서 의견: 붙임

§예방안전과[정책기획관-2258(2025. 2. 20.)호]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§예산입법담당관[예산입법담당관-290('25. 2. 24.)호]

6. 발의의원 서명부: 붙임

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여 소방 역사 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방유물”이란 소방과 관련된 문헌, 서적, 의복, 사진 및 음향자료 등 소방 역사 문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경상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)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 역사 사료관(이하 “사료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사료관의 기능) 사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소방유물의 수집·관리·전시·연구·조사
2.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·협력
3. 그 밖에 소방유물 수집 및 전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6조(소방유물의 취득) ① 도지사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다.

② 소방유물을 기증·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탁유물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.

③ 소방유물을 기증·기탁 하거나 발굴 등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수집 금지 유물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유물을 수집할 수 없다.

1.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
2.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
3. 소방 관련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

제8조(예산) 도지사는 소방유물 보존·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소방기본법

제5조(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)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, 시·도지사는 소방체험관(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,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해당부서 검토의견

실·과	주요내용(조항)	검 토 의 견
예방안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방유물에 관한 용어 정의 - 사료관 설치 및 운영 - 소방유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 	<p>[원안 동의]</p> <p>○ 학술적 및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역사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</p>

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4조)
- 소방유물의 취득 (안 제6조)
- 예산 (안 제8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
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안 제4조(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)는 사료관의 규모와 위치, 설계 및 건축, 운영방식 등 여러 변수에 대한 비용추계가 기술적·단기적으로 어려우며,
- 안 제6조(소방유물의 취득)는 소방유물의 희소성과 가치 변동성, 공급과 수요의 불확실성 및 취득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.
- 안 제8조(예산)는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며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.

4. 작성자

- 예산입법담당관실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최홍기 054-880-5053